

대전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10486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1048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56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제이완컨설팅

피고, 항소인A

변론 종결2015. 3. 27.

판결 선고2015. 4. 17.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56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며, 2012. 10. 1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시까지 월 449,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1심공동피고 B, C, D,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등 다른 토지 활용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혁

판사차호성

판사임한아

별지